

## 중.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

연구자: 권백순 \*  
박치홍 \*  
김병석 \*

### 제 I 장 서론

2000년 7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영세 중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가 포함 되면서, 1996년 1%미만의 재해율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도에 전국 평균 재해율(0.68%)을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하게 되어 2003년 현재는 전국 평균 재해율 0.90 %, 전체 재해자수는 94,924명으로 증가 하고 있다,

5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에 의하여 소극적이거나 안전관리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기업규제 완화조치이후 안전·보건 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되면서,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직원이 없어 서서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변환됨에 따라 산업재해는 점진적 증가 현상을 계속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직, 간접손실을 통해 비교해보면 2003년도의 경우 전체 재해자 94,924명 직접손실 2조4천8백여 억 원의 산재보상금이 지출되었고, 이에 따른 간접손실 비용은 하 인리히의 재해코스트 평가방식에 따라 직접손실의 4배를 간접손실로 계산하면 약 9조 6천여억 원으로, 총 손실비용은 약1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재해자1인당 평균 약1억 2천 육백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세 중,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과 기업 활동 규제완화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안전 관리자 선임 규모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됨으로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변화 및 2000년 7월 1일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율 변동 추이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50인 미만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약 70%정도 점유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사례를 연구해 보고,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자의 역할 효과적인 재해 예방 대책 관한 실태를 파악 하였다.

본 연구범위 중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지만 안전 관리자 선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관리 위탁 사업장중 50인 미만 의 중, 소기업 2,076개 사업장중 30인 ~ 50인 사이 1,573사를 대상으로 316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별하여 D. M을 발송하고, 설문에 응해준 178개사에 대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 충주대학교

## 제 II 장 중.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 선임 현황 분석

### 제 1 절 중.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 선임 현황 분석

#### 1.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분석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 관리자 선임 현황을 조사,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규모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선임 방법 산업안전보건법<sup>1)</sup>에 정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는 1997년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제조업인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었으며,

안전 관리자가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할 사업장의 규모도 제조업은 300인 이상, 비제조업은 50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 완화 조치에 의해 제조업은 500인 이상, 비제조업은 1,000인 이상으로 개정 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된 것은 물론 기존의 선임되었던 안전관리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타 업무를 겸임하게 됨으로서 효과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규모별 안전 관리자 선임 방법

사업의 업종, 규모별 안전 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안전관리자등의 선임<sup>2)</sup>에 관하여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다.

#### 3.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선임 현황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규모의 사업장에 안전 관리자 업무실태를 분석해보면, 조사사업장의 대부분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28.7%)<sup>3)</sup>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겸직 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행을 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3) 그러나 최근의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300인 미만의 안전관리 선임 사업장의 약 76%정도가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어 안전관리자의 설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2004년 7월 16일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관한 포럼 중 노동부 관계자 자료)

2.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실시

안전 관리자를 고용,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중, 소규모 사업장중 기존의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던 경험이 있거나,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의하여 과징금등 행정처분의 경험이 있는 사업장등에서 자발적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 사업장에 대한 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표 2 - 1 )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인 미만의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필요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이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 표 2 - 1 안전관리 대행사업장 재해발생 현황4)]

| 년도   | 30인 미만 (%) | 30~50인 미만 (%) | 50인 미만 누계 (%) |
|------|------------|---------------|---------------|
| 1996 | 1.10       | 0.93          | 0.94          |
| 1997 | 1.34       | 1.00          | 1.10          |
| 1998 | 3.86       | 0.55          | 0.61          |
| 1999 | 1.36       | 0.86          | 0.92          |
| 2000 | 1.20       | 0.83          | 0.88          |
| 2001 | 0.94       | 0.76          | 0.78          |
| 2002 | 1.02       | 0.68          | 0.84          |
| 2003 | 1.31       | 1.03          | 1.07          |

제 III 장 중.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에 따른 효과 분석

제 1절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1. 안전관리실시사업장의 재해분석

가. 안전관리 대행 사업장에 대한 재해현황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50인 미만의 영세 중, 소규모의 사업장이라도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완화된 이 전에 적용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거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을 비교 분석 함으로서 간접적이지만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따라 재해예방 효과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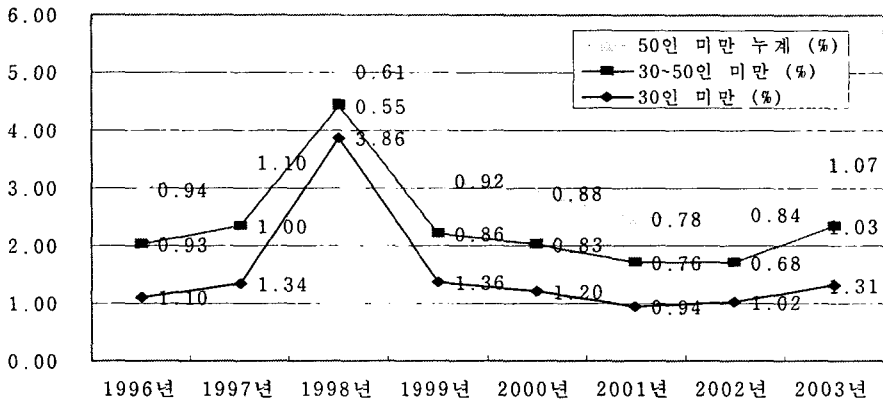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관리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비제조업의 사업장수는 아주 극소수이므로 비제조업에 관련된 자료는 제외하고, 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에서 발생된 재해율을 중심으로 비교 하고자 한다

[표 3 - 1 중. 소규모 안전관리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5)]

- 4) 대한산업안전협회 재해통계
- 5) 대한산업안전협회 재해통계

| 년도   | 30인 미만 (%) | 30~50인 미만 (%) | 50인 미만 누계 (%) |
|------|------------|---------------|---------------|
| 1996 | 1.10       | 0.93          | 0.94          |
| 1997 | 1.34       | 1.00          | 1.10          |
| 1998 | 3.86       | 0.55          | 0.61          |
| 1999 | 1.36       | 0.86          | 0.92          |
| 2000 | 1.20       | 0.83          | 0.88          |
| 2001 | 0.94       | 0.76          | 0.78          |
| 2002 | 1.02       | 0.68          | 0.84          |
| 2003 | 1.31       | 1.03          | 1.07          |

연도별 규모별 재해율



이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한 결과로, 안전 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재해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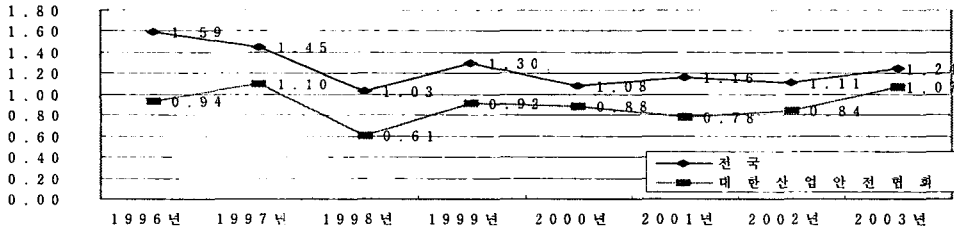
이를 규모에 따른 세부적으로 부분하여 분석해 보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30인~50인 미만규모의 사업장에 비하여 약 30%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대행사업장과 전국의 재해율을 분석해 보면

[표 3 - 2 50인 미만 안전관리 대행사업장의 재해현황과의 비교]

| 년도별  | 50인 미만 전국 재해율 |        |      | 대한산업안전협회 재해율 |       |      | 비교    |
|------|---------------|--------|------|--------------|-------|------|-------|
|      | 근로자수          | 재해자수   | 재해율  | 근로자수         | 재해자수  | 재해율  |       |
| 1996 | 2,470,159     | 39,217 | 1.59 | 141,573      | 1,327 | 0.94 | -0.65 |
| 1997 | 2,358,883     | 34,261 | 1.45 | 71,121       | 732   | 1.10 | -0.35 |
| 1998 | 2,782,816     | 28,812 | 1.03 | 74,897       | 456   | 0.61 | -0.42 |
| 1999 | 2,622,775     | 34,161 | 1.30 | 66,877       | 617   | 0.92 | -0.38 |
| 2000 | 4,109,136     | 44,417 | 1.08 | 66,486       | 588   | 0.88 | -0.20 |
| 2001 | 4,864,090     | 56,250 | 1.16 | 69,860       | 546   | 0.78 | -0.38 |
| 2002 | 5,256,142     | 58,342 | 1.11 | 60,933       | 513   | 0.84 | -0.27 |
| 2003 | 5,304,557     | 65,594 | 1.24 | 68,779       | 735   | 1.07 | -0.17 |

연도별 50인 미만 재해율



상기 자료와 같이 안전관리를 선입(대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과 전국 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6년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관리자 선입제도가 30인 이상(제조업)인 경우에는 재해감소 효과가 약41%, 1998년도에는 약40.77%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중.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 역할 및 효과 측정

중· 소규모 사업장중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 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회수된 178개사를 분석해 보면,

1. 산업재해예방의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 75. 8 %)가 안전, 보건 관리 전문기관 및 경제 단체의 홍보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여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에 관한 관심이 생산 및 품질에 대한 관심보다 미미하거나, 또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령을 구입하거나, 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답변이 ( 25.2 %)로 나타나 외부 기관의 정보를 통한 간접 방식에 의한 정보수집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안( 14.6 %)보다는 산재보상보험에 관련된 재해처리 및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응답이 ( 81.5 %)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정보 보다는 산업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정보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업장내에서 발생된 산업재해에 따른 법률적 책임소재에 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주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 62.9 %), 재해 발생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 18.5 %)보다 월등하게 높아 사업주의 책임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사항 점검을 위한 정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5.1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지도 감독이라는 응답( 12.4 %) 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5.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때 사업주의 안전에 관한 의식의 변화 정도에 대한 설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전에 관하여 매우 많이 변화 되었다( 43.8 %)와 많이 변화 되었다는

답변이( 50.0 %)로 전체 응답자의 93.8 %가 변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6.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때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의식의 변화 정도에 대한 설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전에 관하여 매우 많이 변화 되었다( 30.9 %)와 많이 변화 되었다는 답변이( 42.7 %)로 전체 응답자의 73.6 %가 변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식변화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7. 안전관리자의 활동 중 어느 것이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 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정기 교육이( 44.4 %) 재해발생에 따른 신체적, 금전적 손실에 관한 안내( 32.0 %)로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보다는 교육 및 재해발생에 따른 손실사항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 의한 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8.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따른 위험 설비의 방호조치 및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건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느냐?의 설문을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겠다( 28.7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비용 등을 검토하여 개선하겠다( 42.1 %)는 응답이 70.8 %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는 설비 개선 및 안전을 위한 방호조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9.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한 직접 손실이 있었다( 41.6 %)와, 산업재해로 인한 조업중단 및 근로자의 사기 저하 등 직. 간접 손실을 입었다( 37.6 %)는 응답이 79.2 %로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손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IV 장. 향후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방안

영세 중.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정부는 물론 안전관리전문 기관의 지원과 기술 지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재래예방에 대한 동참이 필요하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및 용자제도를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주에게 용자되는 산재예방기금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용자에 필요한 규제요인을 적극적으로 철폐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위험설비 개선 및 방호장치에 필요한 자금을 현재 처럼 은행을 통하여 용자받도록 하지 말고, 리스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부담되어지는 일시금(시설자금의 약 50%)을 분산하여 사업주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표 4 - 1 산재보상보험에서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출연현황<sup>6)</sup> (단위 : 백만원, %)

6)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으로 통합 ('02. 3. 1)

| 구 분       | 2002년     |           |       | 2003년     |           |      |
|-----------|-----------|-----------|-------|-----------|-----------|------|
|           | 계획(A)     | 실적(B)     | B/A   | 계획(A)     | 실적(B)     | B/A  |
| 합 계       | 2,549,726 | 2,715,625 | 106.5 | 4,929,293 | 4,898,630 | 99.4 |
| 산업안전공단출연  | 127,554   | 127,554   | 100.0 | 147,520   | 146,233   | 99.1 |
| 산재예방사업 용자 | 113,318   | 54,033    | 47.7  | 158,528   | 84,366    | 53.2 |
| 산재예방기금관리비 | 96        | 76        | 79.2  | 374       | 372       | 99.5 |
| 산재예방사업운영비 | 2,537     | 2,199     | 86.7  | 3,591     | 3,352     | 93.3 |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를 통하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자를 의무선임토록 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및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 의한 재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야 할 것이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술 인력 및 현재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30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하여 사업장에 안전 관리자를 의무선임 토록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등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신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참조하여, 일정기간동안 인건비중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거나, 인건비중 일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청년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7))를 도입하여 안전 관리자가 사업장 재해예방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환경 및 소방 등 타 업무 겸직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사양되어가고 있는 산업안전관련 전문교육기관의 육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를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안전.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원 실적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면, 이러한 지원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모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경감은 물론 안전, 보건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조기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직무강화

사업장에서의 재해예방의 가장 기본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시는 물론 안전관리자의 직무인 사업장내 위험요인의 개선 조치를 위한 기술적 제안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재해원인 조사 및 동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전파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따른 재해예방 효과는 뛰어나다 할 수 있다,

7) 고용보험지원제도로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초기6개월간 60만원, 이후6개월간 대기업은 30만원, 중소기업은 6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

## 2. 정부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술지원

현재 정부는 매년 약 20 여억 원의 예산으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을 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1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기술지원을 행하는 당해연도의 재해를 감소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지원하기전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에 관련된 의식이 외부의 지원 및 감시에 의해 지원기간동안 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시행하였다가 사업장의 재해가 감소되면, 또다시 생산성 향상 위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공간을 발생시키게 됨으로서 재해는 재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는 사업주의 의식, 근로자의 안전작업습성이 몸에 익을 때까지 일정기간(약 3년 이상)을 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3. 사업주의 안전에 관한 의식변환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의 정도는, 노동부의 산업안전. 보건에 관련된 지도 감독 결과대 상사업장의 약 80%이상의 사업장이 행정, 사법처리가 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행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상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부과 되고 있으나, 이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참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산업재해의 궁극적 책임은 물론,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을 감안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투자가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4. 산재보상 보험제도의 개선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의 재해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수급비용과 납입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개별 요율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별 요율제는 사업장의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정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세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비용 산정 및 보상금액에 따른 총비용대비 사업장에서 납부한 총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만큼 증. 감하는 제도로 도입하여 재해예방을 하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로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이제는 사업주에게 재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사업주 스스로 재해 예방활동에 적극 투자토록 유인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무재해를 이룩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재해 예방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